기세세무회계
TAX & ACCOUNTING
주소 :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50 302호 · T: 02-6954-0169 · F: 02-6954-0178

상속세 신고 준비 서류

가족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.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.

필수 꼭 준비해 주세요

- [ ] **피상속인(돌아가신 분)의 기본증명서·가족관계증명서**
  정부24 ·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  사망 사실과 상속인 확인용
- [ ] **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**
  본인 보관
- [ ] **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**
  정부24 · 주민센터
  금융재산, 토지, 자동차, 세금,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.
- [ ] **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**
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- [ ] **금융재산 잔액증명서 (사망일 기준)**
  각 금융기관
- [ ] **채무 확인 서류**
  금융기관 · 본인 보관
  대출 잔액증명서, 임대보증금(임대차계약서), 미납 세금·공과금
- [ ] **장례비용 영수증 (봉안·자연장 비용 포함)**
  장례식장 · 본인 보관

추가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비해 주세요

▶ **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**

- [ ] **증여세 신고서·납부 내역 또는 증여 내역**
  본인 보관 · 홈택스
 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이내분이 대상입니다.

▸ 돌아가시기 전 1~2년 사이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큰돈을 인출한 경우

- [ ] **처분 대금·인출금의 사용처 증빙**
  본인 보관 · 은행
  1년 안에 2억 원 이상,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.

▸ 부동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

- [ ] **감정평가서 또는 매매사례 자료**
  감정평가법인 · 실거래가 공개시스템
- [ ] **임대 중인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**
  본인 보관

▸ 보험금·퇴직금이 있는 경우

- [ ] **보험금 지급 내역, 보험계약 내용 (계약자·피보험자·수익자)**
  보험회사
- [ ] **퇴직금·퇴직연금 지급 내역**
  근무하던 회사 · 금융기관

▸ 회사 주식이나 사업체가 있는 경우

- [ ] **최근 3년 재무제표, 주주명부, 사업자등록증**
  해당 회사

▸ 배우자 상속공제·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는 경우

- [ ] **상속재산 분할협의서**
  상속인 작성
 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 확인용
- [ ] **주민등록초본 (동거 기간 확인)**
  정부24

▸ 영농·가업상속공제, 연부연납·물납을 검토하는 경우

- [ ] **사업 관련 서류, 담보 제공 서류 등**
  상담 후 개별 안내

안내 이 목록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. 실제로 필요한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상담 후 꼭 필요한 서류만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.

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는 상담 후 안내드리는 방법으로 보내 주세요.

기세세무회계 TAX & ACCOUNTING 주소 :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50 302호 · T: 02-6954-0169 · F: 02-6954-0178